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97
------	----

2018. 9. 7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년 8월 16일, 채인묵 의원 외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】

-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(2018.9.7.) 상정, 검토보고, 의결(수정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채인묵 의원)

-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서 산학협력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에서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서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

출연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‘보조’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.

-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제정」으로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가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산학연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규정이 삭제되고 동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, 혁신성장위원회는 서울시의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계획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구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 기존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사업자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, 폐지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「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」의 설립·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의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‘산학연협력 사업심의회’를 재설치하기 위한 것임.

나.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과 보조

-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는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(이하 ‘기술혁신법’)의 ‘기술혁신사업’과 ‘기술지도사업’에 대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17조는 기술혁신법의 관련 규정인 제11조를 명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의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’을 추가하여 ‘출연’ 외에도 ‘보조’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<신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<u>출연</u>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<u>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</u>」의 규정에 의하여 <u>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<u>출연하는 경우에는</u>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.</p>	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<u>출연 등</u>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<u>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</u>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<u>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,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동법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.</p>

- 현행 「지방재정법」 1)은 ‘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’와 ‘조례상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’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허용하고 있음(제18조 제2항).
- 안 제17조는 ‘기술혁신사업’과 ‘기술지도사업’에 대한 근거 범규로 기술혁신법 제11조2)를 제시하고 있으나, 해당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출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로 적절하지 않음.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2)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(산·학·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·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- 입법·법률고문의 자문에 따르면, 기술혁신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아니며, 기술혁신법에서 정한 출연·보조 대상인 “학교·기관 및 단체”는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”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- 따라서,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규정한 현행 제 17조 제1항은 「지방재정법」에 위반되며, 개정안의 ‘기술혁신사업’과 ‘기술지도사업’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함.
- 한편, 개정안에서 새로 출연·보조하고자 하는 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’에 관한 사항은 기술혁신법에 적합한 근거 규정(제20조 제5항)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.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~ 7. (생략)

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다. 산학연협력사업심의회 설치·운영

- 서울시는 자치구, 기업,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 조성을 목적으로, 인력의 양성, 연구개발, 과학기술개발의 증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 등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, 서울시는 종전에 각종 산학연협력사업의 평가와 사업자 선정 및 계획 수립 등의 심의·조정을 위하여 ‘산학연정책위원회’를 운영하였음.

<산학연정책위원회 운영 실적>

연도	2015년	2016년	2017년
회의 개최	4회 개최	4회 개최	5회 개최
주요 안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 과제 평가(3건) 등 - 15년 서울형 R&D 지원사업 계획 - 지역특화산업고도화 지원사업 추가 최종평가 - 특화산업 고도화지원사업 지원과제 평가 -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선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별 최종평가·서울전략산업 지원사업 과제 평가·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 등 - 16년 서울형 R&D 지원사업 계획 - 16년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 등 - 16년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- 16년 특화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선정평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별 최종평가·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 등 - 17년 서울형 R&D 지원사업 계획 -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 등 - 기술상용화(공개평가형) 지원사업 평가 등 - 17년 서울형 R&D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조정 심의 등 - 기술상용화 지원사업(클라우드 펀딩형) 하반기 지원 대상과제 최종선정(안) 등

- 하지만,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이 제정·시행('18.1.4)되면서 ‘혁신성장위원회’로 ‘산학연정책위원회’가 통합되었고, 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도 함께 개정되어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·운영 규정이 삭제되었음.
- 한편, ‘혁신성장위원회’는 서울시의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방향과 계획 전반에 대한 거시적 구상을 논의하는 위원회로서, 종전의 ‘산학연정책위원회’에서 수행하던 사업자 선정 등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음.

- 이에 따라 안 제20조의2는 산학연협력사업에 대한 심의·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로 ‘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’를 다시 설치·운영하고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이는,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심의·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, 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를 개정하여 ‘혁신성장위원회’의 기능을 조정하고 ‘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’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.
 - ‘혁신성장위원회’의 기능에서 산학연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거나, ‘산학연협력사업 심의위원회’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.

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 제4조(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) ① 시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조정에 관한 사항
2.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
3.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
4.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기획·평가·사업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5.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
6. 기술기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7.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7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7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 규정이라 볼 수 없어 「지방재정법」에 반하는 ‘기술혁신사업’과 ‘기술지도사업’에 대한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7조 제1항)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----- -----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,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동법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----- ----- 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

제20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3.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
2. 위촉직 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 사회
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1.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2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 3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<u>출연</u>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<u>출연하는 경우에는</u>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</p>	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<u>출연 등</u>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----- <u>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 align="center"><신설></p>	<p>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2. <u>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</u> 3. <u>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</u>

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

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
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
2. 위촉직 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
1. 당해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2. 당해 안전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3. 당해 안전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
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